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58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5,79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30,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가. 원고는 2002. 2. 18.부터 2012. 5.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인 491,445주 중 236,689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위 회사 주식 106,07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2. 4.경 주식회사 C(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36,689주를 포함한 기명식 보통주식 총 484,645주(총 발행주식의 98.61%, 액면가 5,000원)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또한 양도인이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매매대금)

양도주식의 매매대금은 주당 32,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5,508,640,000원으로 한다.

제3조(주식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3-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주식매매대금의 10%인 금일십오억오천팔십육만사천원(1,550,864,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양도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키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의 45%인 금육십구억칠천팔백팔십팔만팔천원(6,978,888,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주식의 55%(266,555주)의 주권인도(또는 미발행주식보관증 발급)를 한다.

제4조의 2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1) 양도인은 양도인 명의주식 및 특수관계인 명의주식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보유자이다. 또한 양도인은 양도인 및 특수관계인 이외 여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자사보유주는 제외)를 잔금지급 이전까지 양도인이 인수(또는 양수인에게 직접 양수도 시켜)함으로써, 잔금지급시 양도주식을 양수인에게 차질 없이 인도 완료한다.

제5조(경영권의 이전)

5-1 양도인은 제3-1항 1)의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대상회사의 회사인감(법인인감 포함), 어음수표장, 은행예금통장 관리 등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과 나머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하 '소액주주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게로의) 주권 양도를 위탁한다'는 문구가 적힌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5. 23. 소액주주들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40,8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2. 5. 23. 및 같은 달 29.에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6,075주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청구에 의해 2012. 5. 2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83,645주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하여 보유한 총주식 483,645주 중 266,555주를 2012. 5. 31.에, 나머지 217,090주를 2012. 11. 30.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비율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내역

(단위: 주, %)

구분	기초		변동		기말		비고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증)	주식 수(감)	주식 수	지분율	
합 계	491,445	100	731,601	731,601	491,445	100	
자배주주	238,689	48.16	246,956	483,645	-	-	본인(A)
특수관계인	106,075	21.56	-	106,075	-	-	배우자, 자녀(2명)
소액주주	141,881	28.88	-	141,881	-	-	D 등 28명
양도법인	6,800	1.38	1,000	-	7,800	1.59	(주) B (자기주식)
양수법인	-	-	483,645	-	483,645	98.41	(주) C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70.87%에서 100%로 29.13%의 비율만큼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위 증가된 지분비율 29.13%에 해당하는 금액(7,437,529,5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35,79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30,0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소액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주주권은 소액주주들에게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소액주주들은 원고에게 주권양도에 따른 위탁을 합의하며 서명날인을 한 사실, 원고는 2012. 6. 1.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매대금 중도금 중 348,648,000원을 2012. 6. 4. 소액주주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취득세는 취득자가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바, 원고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70.87%에서 100%로 29.13%의 비율만큼 증가하였다.

② 원고는 소액주주들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소액주주들은 원고에게 주권양도에 따른 위탁을 합의하였음이 적시되어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양수인이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식을 양수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원고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수인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주명부에 소액주주들이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볼 때, 원고의 도움이 있다면 양수인이 충분히 소액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한다고 정하였는바,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2012. 6. 1. 이전인 2012. 5. 29.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실질적인 경영권행사가 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2012. 11. 30.에야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⑥ 그 외에도 소액주주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액주주들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원고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입법취지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한 점(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무렵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정세진

판사 강정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③ 건축물 중 조작(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7.3.27>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